

제조업 끼임, 정비·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5월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전국 지방관서장 등 가용자원 총동원 일제 불시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5일(금) 제조업 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장·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불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6년 1분기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 또는 점검 시 전원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기 위해 전국 49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인력 및 패트롤카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였다.

*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6.4.14., 노동부)

이날 오후 류현철 본부장도 최근 끼임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기 김포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압연기 등 회전체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끼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도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바닥에 누유된 기름으로 인한 미끄러짐 방지 및 소화설비 미설치 등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특히 '작업 현장 바닥에 누유 및 오일 미스트가 비산되어 미끄러운 상태'로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와 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엄중하게 지적하여 근본적인 제거 등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류현철 본부장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로서 일터의 안전은 결코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정비·수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Lock-Out, Tag-Out)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린다는 기본원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OPS

2.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핵심 점검표

3.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안전수칙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홍현종 (044-202-8945)
담당 부서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허효수 (044-202-8853) 이도현 (044-202-8856)



안전한 제조업 일터를 만드는 필수 안전수칙 !



정비·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LOTO)



방호장치 해체 금지



회전부 덮개 설치

3 끼임사고 예방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방호덮개,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small>(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small>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작업을 하는지 <small>(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small>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small>(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92조)</small>		
전원차단	점검, 수리 등의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였는지 <small>(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small>		
	정지한 기계를 임의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였는지 <small>(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small>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적정하게 받고 사용하는지 <small>(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93조)</small>		

사업장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봄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①정전기 방지조치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격리조치,
 ②화기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③기계·기구 관련 화재 예방조치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인화성·가연성물질 화재·폭발 예방조치	☑ 가습·제전장치 및 도전성 재료 사용 등을 통한 정전기 발생 억제·제거
	☑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
	☑ 인화성·가연성 물질 주변 화기 사용 금지 등 점화원 차단·격리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 화재위험작업 前 가연성·인화성 물질 제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기계·기구 관련 화재 예방조치	☑ 기계·기구 사용 前 이상 유무 점검 및 사용 後 전원 차단
	☑ 기계·기구 사용 중 과부하 등으로 인한 과열 및 누유 등 확인
	☑ 배전반 등 전기시설 점검 및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장치 설치·관리
화재 대비 비상조치	☑ 화재예방·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비상통로 등 비상대피시설 설치 및 관리
	☑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